

【 9 】 양주군도시공원 ·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1. 22.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정이유

-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 공원의 설치·관리와 녹지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규정 한 도시공원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원점용허가 및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허가기준 및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점용허가의 기간은 점용시설·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 안하여 군수가 정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토록 함(안 제8조)

양주군도시공원 ·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 2,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 ·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 · 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의 목적일 것
 -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 일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별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 나. 증축은 가독의 기준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준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

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이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마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철도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

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 표 】

점 용 요 율(제8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5/100 <input type="radio"/> 전주인 경우 주당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 900원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2.5/100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2.5/100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 한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 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 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0.5/100
5. 경찰관 파출소·초소표지 등의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1.5/100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1.5/100
7. 통신시설·측량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input type="radio"/> 무 상
8.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3/100
9. 기존 건축물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5/100
10.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 벌채 및 재식	<input type="radio"/>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 비를 제외한 금액의 20/100이상

점 용 요 율 비 교 표

점 용 대 상	점 용 료	경기도하천·공유수민 점용료 산정기준(유사)	경기도도로점용료산정기준 (유사)
1.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5/100 <input type="radio"/> 전주인 경우 주당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 900원	-	<input type="radio"/> 토지가격의 0.05 <input type="radio"/> 전주인 경우 주당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 900원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2.5/100	<input type="radio"/> 관로등 매설을 위한점용 2.5/100	<input type="radio"/> 관경 0.1m~3m M당 150~7,850원까지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2.5/100	<input type="radio"/> 기타목적의점용 1.5/100	<input type="radio"/> 진입로 0.025,철도·궤도 0.04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 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생 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 시설,비상급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0.5/100	<input type="radio"/> 기타목적의점용 1.5/100	<input type="radio"/> 토지 가격의 0.005
5. 경찰관 파출소,초소,표지등의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1.5/100	<input type="radio"/> 기타목적의점용 1.5/100	<input type="radio"/> 1층~4층이상 토지가격의 0.05~0.065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1.5/100	<input type="radio"/> 기타목적의점용 1.5/100	노점,자동판매기,진열대 0.05
7. 통신시설,측량시설,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input type="radio"/> 무 상	-	<input type="radio"/> 토지가격의 0.05
8.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3/100	<input type="radio"/> 공작물설치 3/100	<input type="radio"/> 토지가격의 0.05
9. 기존 건축물	<input type="radio"/> 재산가액의 5/100	-	<input type="radio"/> 토지가격의 0.05
10.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 빌체 및 재식	<input type="radio"/>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20/100이상	<input type="radio"/> 광업을 목적으로하는 점 용 2.5/100 (토석·사립 등의 채취시 빌도 가산)	-

●都市公園法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制定	1980 · 1 · 4	法律第3256號
改正	1989 · 12 · 30	法律第4183號(政府組織法)
	1993 · 3 · 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3 · 8 · 5	法律第4571號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9 · 2 · 8	法律第5899號
	1999 · 5 · 24	法律第5982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都市에 있어서의 公園의 設置 및 管理와 緑地의 保全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快適한 都市環境을 形成하여 健全하고 文化的인 都市生活의 확보와 公共의 福利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 <改正 97 · 12 ·

13 法5454>

1. “都市公園”이라 함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自然景觀의 보호와 市民의 健康·休養 및 情緒生活의 향상에 寄與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것을 말한다.
2. “公園施設”이라 함은 都市公園의 效用을 다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다음 각호의 施設을 말한다.
 - 가. 道路 또는 廣場
 - 나. 花壇·噴水·彫刻등 造景施設
 - 다. 休憩所·長椅子등 休養施設
 - 라. 그네·미끄럼틀·砂場등 遊戲施設
 - 마. 庭球場·水泳場·弓道場등 運動施設
 - 바. 植物園·動物園·水族館·博物館·野外音樂堂등 教養施設
 - 사. 駐車場·賣店·便所등 利用者를 위한 便益施設
 - 아. 管理事務所·出入門·울타리·담장등 公園管理施設
 - 자. “가”目 내지 “아”目 이외에 都市公園의 效用을 다하기 위한 施設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施設
3. “綠地”라 함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都市의 自然環境을 保全하거나 改善하고, 公害나 災害를 防止하여 良好한 都市景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都市計劃

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것을 말한다.

第2章 都市公園의 設置 및 管理

第3條 (都市公園의 細分) 都市公園은 그 機能에 따라 다음과 같이 細分한다. <改正 93·8·5>

1. 어린이公園

어린이의 保健 및 情緒生活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設置된 公園을 말한다.

2. 近隣公園

주로 近隣居住者의 保健·休養 및 情緒生活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設置된 公園을 말한다.

3. 都市自然公園

自然景觀地를 보호하고, 市民의 保健·休養 및 情緒生活의 향상에 寄與함을 목적으로 設置된 公園을 말한다.

4. 墓地公園

墓地利用者에게 休息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一定한 區域내에 埋葬 및 墓地등에 관한法律 第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墓地와 公園施設을 混合하여 設置한 公園을 말한다.

5. 體育公園

주로 運動競技나 野外活動등 體育活動을 통하여 건전한 身體와 精神을 培養함을 目的으로 設置된 公園을 말한다.

第4條 (造成計劃의 立案·決定) ①都市公園에 관한 都市計劃이 決定된 때에는 그 都市公園이 위치한 行政區域을 관할하는 市長(特別市長 및 廣城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는 그 都市公園에 관한 造成計劃을 立案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②2이상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都市公園 또는 같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行政區域을 달리하는 都市公園에 대하여는 관계市長 또는 郡守가 共同으로 第1項의 造成計劃을 立案하거나 協議에 의하여 立案者를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 特別市 또는 廣城市와 2이상의 道와 관련되는 都市公園에 대한 것은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기타의 都市公園에 대한 것은 道知事에게 그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이 있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

된 것으로 본다.

⑤造成計劃은 都市計劃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決定된 造成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5條 (都市公園의 設置 및 管理) ①都市公園은 당해 公園이 위치한 行政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에 의하여 設置 및 管理한다.

②2이상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都市公園 또는 같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行政區域을 달리하는 都市公園에 대하여는 관계 市長 또는 郡守의 協議에 의하여 그 設置 및 管理할 者와 管理方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第4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의 裁定에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의 設置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6條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 ①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計劃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과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認可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設置할 수 있으며, 그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할 수 있다. <改正 93.8.5>

②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을 管理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 “公園管理廳”이라 한다)는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管理를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公園管理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에게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를 認可하거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8.5>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의 認可 또는 管理 委託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의 權限을 代行할 수 있다. <改正 93.8.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가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에 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地造成事業・市街地造成事業・工業用地造成事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計劃事業에 의하여 設置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8.5>

第6條의2 (公園施設의 安全措置)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그 施設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定期

點檢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8·5)

第7條 (兼用工作物의 管理) ①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과 河川·道路·上下水道·기타 施設이나 工作物(이하 “다른 工作物”이라 한다)등이 相互 그 效用을 결하는 경우에는 公園管理廳과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는 協議에 의하여 그 管理方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가 非行政廳인 경우로서 都市公園을 管理하는 경우에는 都市公園에 관한 工事와 維持·修繕 이외의 管理는 행할 수 없다.

②公園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한 때에는 그 内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6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가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管理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8條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①都市公園안에서 公園施設 이외의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 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의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의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公園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公園造成計劃에 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占用事由가 불가피하고 公衆의 이용에 支障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許可할 수 있으며 土地所有者가 許可申請을 한 경우에는 他에 優先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을 占用할 수 있는 對象 및 占用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原狀回復)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는 그 占用期間이 滿了되었거나 占用을 廢止한 때에는 遲滯없이 都市公園을 原狀으로 回復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으로 回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公園管理廳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章 綠地의 設置 및 管理

第10條 (綠地의 細分) 綠地는 그 機能에 따라 다음과 같이 細分한다.

1. 緩衝綠地

大氣汚染·騒音·振動·惡臭 기타 이에 準하는 公害와 各種 事故나 自然災害 기타 이에 準하는 災害등의 防止를 위하여 設置하는 綠地를 말한다.

2. 景觀綠地

都市의 自然的 環境을 保全하거나 이를 改善함으로써 都市景觀을 향상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綠地를 말한다.

第11條 (綠地의 設置 및 管理) ①綠地는 당해 綠地가 位置한 行政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 및 管理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綠地의 設置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2條 (特定原因에 의한 綠地의 設置) 市長 또는 郡守는 特定原因으로 인한 公害나 事故의 防止등을 위하여 綠地의 設置가 필요한 경우로서 綠地를 決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原因者에게 綠地의 全部 또는 一部를 設置·管理하게 할 수 있다.

第12條의2 (綠地의 占用許可) ①綠地안에서 綠地의 造成에 필요한 '施設의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의 行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를 관리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 "綠地管理廳"이라 한다)의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綠地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占用이 綠地의 設置目的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造成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를 占用할 수 있는 대상 및 占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3·8·5)

第4章 費 用

第13條 (費用負擔) ①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와 綠地의 設置·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속한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93·8·5>

②이상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都市公園에 대한 費用負擔에 대하여는 第4條第2

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準用한다.

③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가 設置하는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은 그 者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93·8·5>

④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緑地를 設置·管理하는 경우에 그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者의 負擔으로 한다.

⑤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과 다른 工作物등이 相互 그 效用을 겹치는 경우 당해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의 負擔에 관하여는 公園管理廳과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가 協議하여 정하여야 한다.

第14條 (入場料등의 徵收) ①公園管理廳과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者는 都市公園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하거나 公園施設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는 都市公園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公園施設을 設置한 것에 한한다.

③公園管理廳(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入場料 및 使用料의 金額과 그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公園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者중에서 민간자본으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改正 99·2·8>

④第3項 但書 및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를 정한 때에는 이를 公園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9·2·8>

第15條 (占用料의 徵收) ①公園管理廳 또는 緑地管理廳은 第8條第1項 또는 第12條의 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緑地를 占用하는 者에 대하여 占用料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私有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8·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金額과 그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公園管理廳 또는 緑地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8·5>

第16條 (原因者負擔金) ①公園管理廳은 都市公園에 관한 工事が 아닌 다른 工事나 行爲로 인하여 都市公園에 관한 事業施行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工事나 行爲에 관한 費用을 負擔하는 者에게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綠地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7條 (負擔金등의 歸屬등) 都市公園 또는 綠地에 관한 負擔金·占用料·使用料 기타 都市公園 또는 綠地에서 생기는 收益은 이를 賦課 또는 徵收한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する 경우에는 당해 徵收者의 收入으로 한다. <改正 93·8·5>

第18條 (負擔金의 強制徵收) 市長 또는 郡守는 이 法에 의한 負擔金·占用料 또는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19條 (費用補助) ①公園管理廳이 施行하는 都市公園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②公園管理廳이 아닌 者가 施行하는 都市公園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地方自治團體가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3·8·5>

第5章 監督

第20條 (法令違反者등에 대한 處分)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의 取消, 그 效力의 정지, 事業의 정지 또는 變更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3·8·5>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者
2. 詐偽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第21條 (公益을 위한 監督處分)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0條의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3·8·5>

1. 事情의 變更으로 인하여 都市公園에 관한 事業의 繼續施行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都市公園에 관한 事業 이외의 公益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第33編 國土開發 · 都市 第3章 都市 都市公園法

3. 公共의 安寧 · 秩序의 維持 또는 公益에 대한 被害를 除去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第22條 (管理廳에 대한 監督處分) 建設交通部長官은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행한 處分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監督官廳의 處分에 위반한 경우에는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행한 處分을 取消 · 變更 또는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 · 8 · 5, 97 · 12 · 13 法5454>

第6章 補 則

第23條 (文化財등에 대한 特例) ①建設交通部長官은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史蹟 · 名勝 · 天然紀念物등으로 指定된 地域이나 그 保護地域안에 都市公園 또는 綠地에 관한 都市計劃을 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89 · 12 · 30, 93 · 3 · 6, 97 · 12 · 13 法5454, 99 · 5 · 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쳐 決定된 都市公園 또는 綠地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는 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3條의2 (청문)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 · 12 · 13 法5453)

第24條 (損失補償) ①第21條 · 第22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 또는 命令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한 處分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國庫에서,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행한 處分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속한 地方自治團體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93 · 8 · 5, 97 · 12 · 13 法5454>

②第1項의 경우에 당해 損失이 第21條第 2號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公園管理廳은 그 公益事業에 관한 費用을 負擔하는 者에게 당해 損失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 ·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그 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 · 8 · 5, 97 · 12 · 13 法5454>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 公園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都市公園法

管理廳·綠地管理廳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이 있을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25條 削除 <99·2·8>

第26條 (公園臺帳) ①公園管理廳은 都市公園臺帳을 作成하여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②都市公園臺帳의 作成·保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7條 削除 <99·2·8>

第28條 (國公有財產의 處分制限) 都市公園 및 綠地안에 있는 國有地 또는 公有地와 당해 土地에 定着한 物件은 都市計劃으로 정한 目的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第29條 (다른 國家事業에 대한 特例) 이 法에 의하여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 事項으로서 國家事業에 관계되는 것은 그 事業의 主務官廳이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가 成立된 경우에는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3·8·5>

第30條 (條例에의 委任)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都市公園 또는 綠地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1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章 罰則

第3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8·5, 99·2·8>

1.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認可 또는 委託을 받지 아니하고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設置하거나 管理한 者
2. 第8條第1項 또는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公園 또는 綠地안에서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한 者
3.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都市公園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徵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都市公園法

收한 者

第33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8·5, 99·2·8>

1. 第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都市公園에 관한 工事와 維持·修繕 이외의 都市公園管理를 행한 者
2. 第8條第1項 또는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않아서 都市公園 또는 緑地안에서 土地의 形質變更 또는 竹木의 伐採·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을 행한 者
3.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 금액을 초과하여 入場料를 徵收한 者

第34條 (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的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 ①(施行日) 이 法은 1980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 ②(造成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決定된 造成計劃은 이 法에 의하여 決定된 것으로 본다.
- ③(占用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公園法에 의하여 都市公園의 占用·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占用·使用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 則 <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 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 則 <93·8·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綠地의 占用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關係法令에 의하여 緑地안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都市公園法

에 建築物·工作物 기타 施設을 設置하였거나 設置하고 있는 者는 第1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緑地의 占用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設置중인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에 대한 特例) 이 法 施行당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또는 郡守의의 者가 設置중인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귀속에 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당해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實施計劃의 내용에 불구하고 第6條第5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附 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 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 <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都市公園의 入場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여진 入場料는 第14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入場料로 본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대지 第6條 省略

● 도시공원법시행령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제정	1980 · 10 · 6	대통령령 제10038호
개정	1990 · 9 · 15	대통령령 제13103호
	1993 · 12 · 27	대통령령 제14029호
	1994 · 12 · 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1997 · 12 · 27	대통령령 제15554호
	1999 · 4 · 9	대통령령 제16244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등의 설치·관리인가신청) 법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 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93 · 12 · 27)

제 3 조 (권한의 대행) ①법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의 인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 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3 · 12 · 27)

1. 법 제 7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 및 공고
 2. 법 제13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비용부담에 관한 협의
 3. 법 제26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第33編 國土開發 · 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 4 조 (권한대행결과의 보고) ① 공원관리자가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② 공원관리자가 제 3 조제 1 항제 3 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 및 보관장소와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③ 공원관리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점용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 8 조제 1 항 또는 법 제 12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7>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 8 조 또는 법 제 12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 또는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93. 12. 27)

제 6 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 9. 15, 93. 12. 27, 97. 12. 27, 99. 4. 9>

1. 전주 · 전선 · 변전소의 설치
2.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공동구의 설치
3. 도로 · 교량 · 철도 및 궤도 · 노외주차장 · 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 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 · 초소 · 표지 · 등대의 설치
 6. 삭제 <90·9·15>
 7. 방화용 저수조 ·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8. 통신시설 ·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 한의 시설의 설치
 - 8의2. 농업 · 임업 ·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8의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 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8의4. 공원관리청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 9의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 물의 설치
 10.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
 1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 재축 · 증축 또는 대수선
 - 11의2.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13.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3·12·27, 97·12·27, 99·4·9>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제7호 · 제8호의2 · 제8호의3 및 제9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 재축 · 증축 또는 대수선
- 4의2.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4의3.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5. 제 1 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제 7 조 (점용허가의 기준) ①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9·15, 93·12·27, 97·12·27, 99·4·9>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도괴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 가.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 규정한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 나. 제 6 조제 1 항제 1 호에 규정한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쪽 5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

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철도 빛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2)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 · 공장용지 · 철도용지 · 학교용지 · 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3) <삭제>

(4)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마. 제 6 조제 1 항제 5 호에 규정한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바. <삭제>

사. 제 6 조제 1 항제 7 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아. 제 6 조제 1 항제 8 호의2 및 제 8 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일 것

(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 · 공장용지 · 철도용지 · 학교용지 · 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 · 임업 ·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 · 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第33編 國土開發 · 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령

- (2)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될 것

자. 제 6 조제 1 항제 8 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1)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일 것
- (2) 존속기간이 3월이하일 것

차. 제 6 조제 1 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할 것

- (1)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 (2)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 (3)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보육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 (4) 증축후의 층수가 3층이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층이내)일 것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2. 제 6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 및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제 1 항제 2 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 6 조제 1 항제 8 호의2 및 제 8 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제 1 항제 2 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전까지로 한다.
4. 제 6 조제 2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제 1 항제 2 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 8 조 삭제 <93.12.27>

제 9 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의 설치) ①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자"라 한다)는 당해 녹지의 결정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

실한 사이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 · 관리를 하게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 관리하여야 할 녹지와 특정원인자가 설치 · 관리하여야 할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될 때에는 그 특정원인인자간의 협의한 바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 ·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특정원인자가 설치 · 관리하여야 할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원인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4·12·23>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의 설치 · 관리비) ① 제 9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 및 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비 · 보상비 · 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녹지관리청이 그 특정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12·27>

③ 녹지관리청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타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4·12·23, 97·12·27>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4·12·23>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령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정원인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제11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공원시설중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관리시설등의 기반시설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5개이상의 유희시설 및 2종목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하되, 그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제12조 (비용보조)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와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3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의 절차)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법령위반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1. 처분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처분에 부관을 붙인 때에는 그 내용

②삭제 <93·12·27>

제14조 (공익상 필요한 처분의 절차)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1. 처분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처분에 부관을 붙인 때에는 그 내용

② 삭제 <93·12·27>

제15조 (재결신청)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4·9>

제18조 삭제 <97·1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는 이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90·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7·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령

부 칙 (99. 4. 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종교용 시설의 증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3층이상의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 차목(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층수(설치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증~~, 신고시의 층수를 말한다)이하로 이를 증축할 수 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정	1980 · 10 · 15	건	설	부령 제275호
개정	1982 · 4 · 17	건	설	부령 제327호
	1986 · 1 · 10	건	설	부령 제395호
	1987 · 7 · 24	건	설	부령 제421호
	1990 · 9 · 10	건	설	부령 제466호
	1993 · 6 · 19	건	설	부령 제528호
	1993 · 12 · 30	건	설	부령 제540호
	1999 · 4 · 22	건	설	교통부령 제183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 2조제 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 · 4 · 22>

(전문개정 86 · 1 · 10)

제 3 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3 · 12 · 30>

제 4 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도시공원은 법 제 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별표 2의 기준이 하로 할 수 있다. <개정 82 · 4 · 17, 86 · 1 · 10, 93 · 12 · 30>

②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각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당해 도시계획구역 천반에 걸친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 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공해완화를 위한 녹지계통등 도시의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 · 1 · 10>

③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기능의 도시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를 별표 2의 기준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86 · 1 · 10>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규칙

④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 5 조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① 하나의 도시공원안에서 법 제2조제2호 각목에 규정된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전체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당해 도시공원면적(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 시설구역의 면적을 말한다)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2·4·17, 86·1·10>

② 삭제 <86·1·10>

제 6 조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2·4·17, 86·1·10, 87·7·24, 93·12·30, 99·4·22>

1. 도로, 광장 및 관리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한다.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단위별로 1개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2.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화장실·음수장 및 공중전화실에 한한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3. 별표 2의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및 도보권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 오락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의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별표 2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권근린공원 및 광역권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휴양, 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의시설등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회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회시설 및 운동시설

나.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

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약국·유스호스텔·수화물예치소·시계탑·주차장 및 매점

6.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기타 시설중 장례식장·납골당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7.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야유회장 및 야영장에 한한다), 유회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기타의 유적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한한다),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수목·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원시설중 신체장애인,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원이용자의 편의와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자연공원 안에서 그 공원면적의 2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일정한 구역(이하 "공원시설구역"이라 한다)에 공원시설을 집단화할 수 있다. <신설 82·4·17>

제7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회시설등의 종류)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유회시설·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유회시설·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86·1·10)

제7조의2 (입장료의 신고등)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4·22)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①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82·4·17, 93·12·30, 99·4·22>

1.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

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공원 : 60퍼센트이하

나. 근린공원 : 40퍼센트이하

다. 도시자연공원 : 20퍼센트이하

라. 묘지공원 : 20퍼센트이상

마. 체육공원 : 50퍼센트이하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시설구역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체육공원에는 공원시설부지면적의 60퍼센트이상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미만 일 것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원시설은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2·4·17, 86·1·10, 87·7·24, 90·9·10, 93·12·30, 99·4·22>

1. 유회시설중 순환회전차 기타 이와 유사한 유회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당해 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의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미만인 도시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안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第33編 國土開發 · 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규칙

3. 편의시설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별표 2의 균린공원중 광역권근린공원에 한한다)

3의2. 운동시설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 체육공원 및 별표 2의 균린공원중 광역권근린공원에 한한다)

4. 운동시설중 간이골프장 : 30만제곱미터이상의 균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자연공원

4의2.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이상의 균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5.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이상의 체육공원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93·12·30>

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당해 도시공원의 바깥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30>

⑤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양시설중 도서관의 설치는 당해 시설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7층까지 할 수 있다. <개정 82·4·17>

⑦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9·4·22>

제 9 조 (녹지의 설치기준) ①녹지는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계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0>

1.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 소음 · 진동과 악취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환경의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 ·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 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이상이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규칙

- 될 수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 (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동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등에서 발생하는 폐연·소음과 진동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려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 가. 당해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옹·시선유도·지표제공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 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전축제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당해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주로 도시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이내로 할 것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9·4·22>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6·19, 93·12·30>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방음벽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제 9 조의2 삭제 <99·4·22>

제10조 (공원대장)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4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0>

②도시공원대장은 당해 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공원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설치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①삭제 <93·12·30>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22>

1. 삭제 <99.4.22>
2. 공사설계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6.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12조 (점용허가신청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99.4.22>

(전문개정 93.12.30)

제13조 삭제 <99.4.22>

제14조 (공고방법)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대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82.4.17 건설부령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안의 공원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묘지공원안의 공원시설 부

지면적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86·1·10 건설부령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7·24 건설부령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9·10 건설부령4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6·19 건설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30 건설부령5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원시설중 노인복지회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9·4·22 건설교통부령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안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골프연습장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99·4·22>

공원시설의 종류(제 2 조관련)

공원시설	종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령, 못, 폭포
2. 휴양시설	야유회장, 야영장,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3. 유화시설	시소, 정글짐, 사닥다리, 순환회전차, 모노레일, 쑥도, 발물놀이터, 벳놀이터, 낚시터
4. 운동시설	간이골프장(6홀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한다),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헤슬링장,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도서관, 독서실, 기원, 온실, 야외극장,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와 고분·성터·고옥 기타의 유적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6. 편의시설	우체통, 공중전화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약국, 유스호스텔,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다과점, 사진관
7. 공원관리시설	창고, 차고, 계시판, 표지, 조명시설,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수도, 우물
8. 기타시설	장례식장, 납골당,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별표 2) <개정 93·12·30>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 4 조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미터 이하	1천500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 근린생활권근린공원(주)	제한없음	500미터	1만제곱미터이 상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이하		
—도보권근린공원(주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없음 이하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이상
—도시계획구역권근린공원(도시계획 구역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광역권근린공원(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만제곱미터이상
○도시자연공원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체육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만제곱미터이상

(추 44)

(별표 3) <개정 93·12·30>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제5조관련)

공원구분	면적	건폐율
1. 어린이공원	전부해당	100분의 5이하
2. 근린공원	가. 3만제곱미터이상 나. 3만제곱미터이상 10만 제곱미터미만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15이하
3. 도시자연공원	다. 10만제곱미터이상 가. 30만제곱미터미만 나. 30만제곱미터이상 50 만제곱미터미만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8이하
4. 묘지공원	다. 50만제곱미터이상 전부해당	100분의 4이하 100분의 2이하
5. 체육공원	가. 3만제곱미터미만 나. 3만제곱미터이상 10만 제곱미터미만 다. 10만제곱미터이상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0이하

(별표 4) <신설 99·4·22>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8조제7항관련)

1. 위치 및 경관

-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일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높은 철주와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3. 설치골프장의 수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수는 1개소로 할 것. 다만, 하나의 도시공원이 2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각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도시공원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당 1개소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추 110)

(별표 5) <개정'03·12·30>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

1.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2. 도시공원의 위치
3.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5. 도시공원의 연혁
 - 가.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연월일
 - 나.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연월일
 - 다. 도시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연월일
 - 라.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마.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 바. 기타 참고사항
6.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
 - 가. 종류 및 명칭
 - 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바닥면적 및 연면적)
 - 다.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라. 노천형태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단일공원시설로서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등이 혼합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형태중 비중이 가장 큰 형태의 시설로 분류하고, 공작물 또는 노천시설의 설치면적은 당해 시설의 외벽 또는 울타리 기타 경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 마. 공원시설별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바. 관리방법
 - 사. 공원시설의 설치연월일
 - 아. 공원시설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 자. 공원시설중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의 시설로서 그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시설의 유지 · 수선에 관한 사항
 8. 별표 3의 건폐율의 합계
 9.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와 당해 도시공원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
 10.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
 - 가. 종류 및 명칭

第33編 國土開發 · 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규칙

- 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다.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라.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마.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바. 점용기간(점용 허가연월일을 포함한다)
 11. 도면은 축척 5,0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시공원의 경계
 나. 공원조성계획의 내용
 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
 라. 점용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

〔별지 제1호서식〕〈신설 99·4·22〉

도시공원 입장료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도시공원	명칭		공원면적	
	위치			
공원시설 설치 종류				
입장료				
입장료 징수 예정일				
도시공원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원관리청 귀하				

신고 제호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도시공원	명칭	공원면적		
	위치			
도시공원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원관리청 인 시장·군수				

30301-19211민
99. 2. 24 '승인'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추 110)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93·12·30>

<input type="checkbox"/> 도시공원 <input type="checkbox"/>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성명(명 청)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소재지)			
④ 도시공원(녹지)	명칭 의 명칭 및 위치			
⑤ 점용 목적 및 대상				
⑥ 점용 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⑦ 점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 1부 2. 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 : 각 1부 3. 공사시행방법 : 1부 4. 원상회복방법 : 1부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30301-16611 민
93. 12. 10 승인182mm × 25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99·4·22>

경 기 도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 전화(033)249-3413 / FAX249-3419
도시계획과 주민자치과 담당자 차동경

문서번호 도계 11000 - 713
시행일자 1999. 5. 27.(년)

(경 유)

받 음 받는곳 창조

참 조 녹지과장, 도시과장

선 결		3	지 시	
접 임 시 간		1999.5.27..	결 재	상정의
수 번 호		97/3 (1520)	·	
처 리 과		도시과	공	
담 당 자		가동경	람	

제 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시답

1. 관서교통부 관리 11000-1063('99.5.21)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청서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99. 4. 9)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도시공원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편한 점이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은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시·군 조례준칙을 제정·시행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준칙(건설부훈령제880호, '94.9.3)과 녹지급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운영에 대한 지시(관리58407-845 : '97.4.25) 및 시설녹지안에서의 공사용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지시(녹지58401-2117 : '94. 9.13)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확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1.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준칙(건설부훈령제880호, '94.9.3)과 녹지급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운영에 대한 지시(관리58407-845 : '97.4.25) 및 시설녹지안에서의 공사용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지시(녹지58401-2117 : '94. 9.13)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확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지

전경 도시계획과장 임규배



받는곳 : 터

도시공원 :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자제의 은실
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기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
자별로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궁래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
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
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
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기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의단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부~~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특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애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④(녹지점용허가)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재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②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온·착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 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전용허가할 것
-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 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 을 위하여 시설물의 토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전용허가할 것
-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수~~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명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수~~수~~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전용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지지변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등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99. 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

점 용 료 (예시)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	· 재산가액의 ○/100이상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 " "
3.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 "
4. 기존시설물	· " "
5. 형질토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이상
6.	
7.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01332

군 보

제 157 호
1999년 10월 11일 (월)

차 례

조례

- 양주군 조례 제 1721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17
- 양주군 조례 제 1722호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 .. 17

규 칙

- 양주군 규칙 제 1112호 양주군부동산증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정수규칙증개정규칙 .. 18
- 양주군 규칙 제 1113호 양주군부동산증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증개정규칙 .. 24

자치법규입법예고

-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 1999-347호 양주군도시공원 ·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 3
-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 1999-356호 양주군국토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9

고 시

- 양주군 고시 제 1999-78호 유수인용(주수)허가 사항 고시 12
- 양주군 고시 제 1999-80호 퇴천 도시계획시설(공원)설시계획인가 고시 13

공 고

- 양주군 공고 제 1999-353호 건축법상 도로 변경지정에 관한 공고 16

회 람	11.6.9	11.7.14	11.8.14					
--------	--------	---------	---------	--	--	--	--	--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57 호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 1999-347 호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주·군·수
1999년 10월 11일

1. 조례제명 :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안

2. 제정취지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전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공원 및 녹지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공원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원 점용 허가 및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허가기준 및 요건을 규정 함(안 제3조, 제4조)

나. 점용 허가의 기간은 점용 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 시기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고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기간 만료 30 일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도록 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양주군수(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820-2351 ~ 2, FAX: 820-23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양 주 군 보

제 157 호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 ⑦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전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 나. "식물관련시설"은 벼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제등의 온실의 목적일 것
 -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 나. 가설건축물이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 나. 증축을 목표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 다. 기초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 주 군 보

제 157 호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배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양 주 군 보

제 157 호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증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이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 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명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계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양 주 군 보

제 157 호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양 주 군 보

제 157 호

[별 표]

점 용 요 율(제8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 재산가액의 5/100 ○ 전주인 경우 주당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 900원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설치	○ 재산가액의 2.5/100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의주차장	○ 재산가액의 2.5/100
4. 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재산가액의 0.5/100
5. 경찰관 파출소,초소,표지등의 설치	○ 재산가액의 1.5/100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재산가액의 1.5/100
7. 통신시설,측량시설,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두 상
8.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재산가액의 3/100
9. 기존 건축물	○ 재산가액의 5/100
10.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즉독의 벌채 및 제식	○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20/100이상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제정

□ 제정이유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전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공원의 설치·관리와 녹지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공원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원점용허가 및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허가기준 및 요건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나. 점용허가의 기간은 점용시설·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토록 함(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도시공원법 : 제5조·제8조·제11조·제12조의 2·제15조·제30조

○ 도시공원법시행령 : 제5조·제6조·제7조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99. 10. 11 ~ 10. 23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참고사항

○ 방침결정문서(준칙공문)

○ 입법예고문('99. 10. 11. 군보 제157호)